서울과학기술대학교 교무분과위원회규정

제정 1983. 10. 18.

개정 2001. 09. 03.

개정 2010. 08. 30.

제1조(목적) 본교의 교무에 관한 사항을 교무위원회의 회부하기전에 심의하기 위하여 교무분과위원회(이하 "위원회"라 한다)를 둔다.

제2조(구성)

- 1. 위원회는 학부 및 학과 교수 중에서 총장이 위촉하는 위원 약간명으로 구성한다.
- 2. 위원장은 교무처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교무처장이 지명하여 총장이 위촉할 수 있다.
- 제3조(임기) 위원장의 임기는 보직기간으로 하고 위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하되 중임할 수 있다.

제4조 (회의)

- 1. 위원회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위원장이 통고 소집한다.
- 2.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심의한다.
 - 가. 교육과정에 관한 사항

- 나. 수업에 관한 사항
- 다. 학사운영에 관한 사항
- 라. 기타 교무행정상 필요한 제반사항

부칙

이 규정은 1983년 10월 18일부터 시행한다.

부칙

제1조 (시행일) 이 규정은 2001년 9월 3일부터 시행한다.

부칙(제631호, 2010. 8.30)

이 규정은 2010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. (교명변경에 따른 일괄개정)